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제작증명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함(안 제38조).
- 자격증명 등의 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명 등의 시험 응시·심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가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취소·정지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제48조의4 및 제144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급·실시하는 자격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
인증에 유효기간 또는 유효성 검사제도를 신설함(안 제48조의2,
제85조의2, 제90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 누구든지 비행 중인 항공기에 격추 등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등의 조치를 받은 항
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
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시험·심사 면제 폐지(안 제38조제1항제 2호, 제112조제3항)

개정안은 종래 인정하던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해 자격증명을 위
한 시험·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개정규정 적용에 대해 별도 부칙을 두고 있지
않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현재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도 자격증명 시험·심사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시험·심사 면제를 제한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부 칙 <u>제3조(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u> <u>② 제1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u>

2. **탑재용항공일지 비행시간 허위 기재행위의 제재**(안 제43조제1항제11호의2, 제48조의4제1항제5호의2 및 제144조의2제3항)

개정안은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격증명 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안 제43조제1항제11호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안 제48조의4제1항제5호의2)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의2제3항)의 제재를 신설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항공안전법」에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기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용어도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의 입장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탑재용항공일지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함.

또한,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할 경우에도, 해당 전문교육기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게 되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에서,¹⁾ 탑재용항공일지의 비행시간 허위 기재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전문교육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²⁾

1)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례

2) 유사 입법례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⑪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② (생략)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전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1. ~ 11. (생략)	1. ~ 11. (생략)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u>교육과정에 입과한 항공종사자가 <u>탑재용항공일지</u>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u>	11의2. ----- ----- <u>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u> -----
12. ~ 31. (생략)	12. ~ 31. (생략)
② ~ ⑦ (생략)	② ~ ⑦ (생략)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1. ~ 5. (생략)	1. ~ 5. (생략)

5의2. <u>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가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단서 신설></u>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의2. ----- <u>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u> ----- <u>.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6. ~ 8.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

3.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안 제67조의2 등)

개정안은 i) 항공기에 대한 격추 등 무력사용을 금지하되(안 제67조의2제1항), ii) 항공기 식별 또는 안전 유도를 위해 접근, 비행경로 안내·지시, 착륙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7조의2제2항), iii) 이러한 조치에 항공기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안 제67조의2제3항), iv)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명 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안 제43조제1항제21호의2, 제114조제1항제13호의2),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9조제2항제1호)으로 제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격추 등 무력 사용 금지(안 제67조의2제1항)

개정안은 “격추” 등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안 제67조의2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의2³⁾에 따른 ① “무기사용” 금지(안 제67조

의2제1항 관련)와 ② “항공기의 유도통제 또는 요격”에 관한 사항(안 제67조의2제2항 관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유도통제 또는 요격”(Interception)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2(항공규칙)에서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 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항공기에 접근,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를 따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설명함.

그런데, 개정안은 “격추”로 규정하고 있는바, “격추”는 “비행기나 비행선 따위를 쏘아 떨어뜨림”을 의미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의2에 맞춰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u>격추 등 무력</u> 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 ----- <u>무력</u> ----- -----.
②·③ (생략)	②·③ (생략)

3)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의 2

- (a) 체약국은 모든 국가가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무기의 사용을 삼가하여야 하며, 또한 민간항공기를 유도통제(Interception)하는 경우에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조치의 주체(안 제67조의2제2항)

개정안은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안 제67조의2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접근·식별, 비행경로 안내·지시, 착륙 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탑승자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개정안은 접근·식별, 비행경로 안내·지시, 착륙 지시 등의 조치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안 제67조의2제3항에서는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증명 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안 제43조제1항제21호의2, 제114조제1항제13호의2),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9조제2항제1호)으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조치의 주체를 명확하기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생 략)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할 수 있다. 이 경우 ----- ----- -----.

1. ~ 4. (생략)	1. ~ 4. (생략)
③ (생략)	③ (생략)

3) 제재 대상 조치 위반행위(안 제43조제1항제21호의2, 제114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59조제2항제1호)

안 제67조의2제3항에서는 항공기 기장으로 하여금 i) 안 제67조의2제2항 각 호의 조치와 ii)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4)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즉시 이행하도록 하되, iii) 외국의 영공에서는 해당 국가가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그런데, 개정안은 안 제67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격증명 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안 제43조제1항제21호의2, 제114조제1항제13호의2)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 제67조의2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 외에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 퇴거·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2. 호출부호
 3. 기종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⁵⁾ 이행의무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조치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 <u>자격증명등</u> ”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 ----- ----- ----- ----- -----. ----- ----- -----.
1. ~ 20. (생략)	1. ~ 20. (생략)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즉시 응하지 아니한 경우	21의2. ----- ----- 조 <u>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u> -----
23. ~ 31. (생략)	23. ~ 31. (생략)
② ~ ⑦ (생략)	② ~ ⑦ (생략)

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안 제159조제2항제1호는 안 제6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나, 제159조는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라는 점에서 항공기 기장에게 조치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안 제67조의2제3항만 해당 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점과, 외국의 영공에서 해당 국가가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법령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하는 문제가 있는 점,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도 안 제6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안 제121조제6항)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기장의 조치이행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외국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 대상에 제외하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현행과 같음)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7조의2,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 -----,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3. (현행과 같음)	2. 3.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5. 유효성 검사주기의 기산일(안 제38조의2제1항)

개정안은 5년마다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의 유효성을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종료일”을 검사주기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 검사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ii) 유효성 검사와 그 결과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 유지 여부가 확인된 이후부터 검사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점 및 iii) 안 제90조의2제2항에서는 “통보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검사의 종료일”이 아닌 “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검사주기를 기산하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u>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u> 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 ---- <u>항공운송사업자는</u> ----- ----- -----제3항----- ----- <u>같은 항</u> <u>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u> ----- ----- - <u>안전운항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u> <u>기 위하여 운항증명의</u> -----. ② ~ ④ (생략)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회)